

수원지방법원 2022. 3. 23 선고 2021나548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열

변 론 종 결 2022. 3. 2.

판 결 선 고 2022. 3. 23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1. 12. 선고 2020가단559349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(C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2019. 5. 17. 체결된

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1,078,2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

31,078,2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

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0932호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2018. 8. 3.자 지급명령에 기하여 '21,835,895원 및 그 중 21,677,389원에 대하여 2017. 7. 20.부터 2018. 1. 3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9. 19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'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나. B의 모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, B의 형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. 5. 17.자 협의분할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고 한다)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. 11. 26.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다. 원고는 2020. 9. 28.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,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B의 다른 채권자인 E 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4 지분(B의 상속분)에 관하여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7250호), 2020. 7. 15. 이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20. 8. 26. 확정되었다(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'선행판결'이라고 한다). E 유한회사는 2020. 11. 13. 위 확정된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자대위로 2020. 8. 26.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4분의 3 지분을 피고가, 4분의 1 지분을 B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,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58 판결).

나.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을 이 사건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대한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욱, 판사 안좌진, 판사 이혜미

[별지 목록]

부동산의 표시

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시멘트 벽돌조

면 적 : 호 44.70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 830.3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8분의1

